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9
------	-----

2022.12.21.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10월 17일, 이민옥 의원 외 16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2022.12.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민옥 의원)

1. 제안이유

-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2021. 6. 15.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2022. 2. 21.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였음.

- 현행 조례는 실태조사 대상을 인증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밖의 가사 노동서비스 종사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에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실태조사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제4호)
- 나. 실태조사의 대상에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를 추가함(안 제8조제1항)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플랫폼이나 개인간 소개로 이뤄지는 가사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의 대상에 비공식 가사노동자(“그 밖의 가사노동 서비스 종사자”)를 포함하고자 빌의됨.

나. 가사노동자의 입법 배경

-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2년 6월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제정 · 시행되고 있음(2021.6.15.).
- “가사근로자법”에 따르면, 가사노동자는 산재보험, 최저임금 보장, 고용유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고용 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 ·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회 두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5. 그 밖에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 서울시 또한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2022.2.2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하고 있음.¹⁾

- 현행 조례 역시 가사노동자의 정의를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규정해 미인증 직업소개소나 가사플랫폼, 개인간 소개 등을 통해 거래하는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조례 제정 당시 다양한 계약 형태가 존재하는 가사노동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사노동자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 폭넓게 정의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채택되지 않음.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노동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시는 2023년 2월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가사노동자에 대한 주요 사업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다. 조례의 정의 신설 및 실태조사 대상 확대

- 개정안은 조례의 정의에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를 신설하고(안 제2조제4호),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태조사 대상에 이들을 추가함(안 제8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u>”란 제3호에 따른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u>직업안정법</u>」에 따른 <u>직업소개 및 가사노동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u> 등을 통한 <u>직업소개</u> 등에 따라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p>
<p>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u>가사노동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u>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8조(실태조사) ① ----- ----- <u>수립 등을</u> ----- ----- <u>가사노동자 및 그 밖의</u> <u>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u>----- ----</p> <p>② (현행과 같음)</p>

- 전통적인 가사서비스 시장은 점차 축소되면서 플랫폼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플랫폼 기업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비공식 가사노동자는 권리보호 및 실태조사의 사각지대에 계속 남게 됨.

- 통계청의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는 전국 10만 5천명, 서울시 3만 8천명 규모로 추정됨.
 - 2019년 같은 조사에서는 공식부문 가사노동자는 20만~40만명, 비공식 부문까지 포함하면 최대 60만명으로 추정하는 등 조사기관별 · 시기별 결과가 상이함.
- 고용노동부는 2022년 6월 법 시행 후, 올해 말까지 100개소의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목표로 하였으나, 공식사이트(가사랑²⁾)에서 확인되는 인증업체는 올해 전국에 33개소(서울 12개소)에 그치고 있고 휴·폐업 중인 업체를 제외하면 실제 영업 중인 인증업체는 전국 30개소(서울 11개소)에 불과함.
- 따라서 실태조사 대상에 비공식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를 포함하는 개정안은 서울시 가사노동자 기본계획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비공식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로 한정하고 있어 조사결과가 추후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과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이나 정책과 사업의 지원 대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2) <https://www.work.go.kr/gsrnMain.do>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민옥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9
----------	-----

발의년월일: 2022년 10월 17일
발의자: 이민옥 의원(1명)
찬성자: 강동길, 김규남, 김동욱,
김성준, 남창진, 박강산,
박수빈, 박영한, 박칠성,
송경택, 이영실, 이용균,
장태용, 전병주, 최기찬,
최재란 의원(16명)

1. 제안이유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조례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에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실태조사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 나. 실태조사의 대상에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를 추가함(안 제8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란 제3호에 따른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노동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제1항 중 “수립을”을 “수립 등 을”로, “가사노동자”를 “가사노동자 및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u>”란 제3호에 따른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u>직업안정법</u>」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노동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p>
<p>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u>수립</u>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u>가사노동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u>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8조(실태조사) ① -----.</p> <p>-----.</p> <p>-----.</p> <p>-- <u>가사노동자 및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u>-----.</p> <p>-----.</p> <p>② (현행과 같음)</p>